무역상무연구
제67권
2015. 8, pp. 143~162.

논문접수일 2015. 07. 28.
심사완료일 2015. 08. 19.
게재확정일 2015. 08. 20.

러시아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김 성 룡*

Ⅰ. 서 언
Ⅱ. 러시아 투자 환경 변화
Ⅲ. 분쟁사례분석
Ⅳ. 한국기업의 분쟁대응전략
Ⅴ. 결 언

주제어 : 중재, 뉴욕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SCC, ECA

Ⅰ. 서 언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개발에 매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출전략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대가 점차 변하면서 과거 제조업 중심의 무역은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비스나 투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정책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과 같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진출이 용이하도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E-Mail : jackie3@knu.ac.kr

록 수출 경쟁력을 높여 주었다.

그러나 자원이 풍족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미국이나 중국 등 자원부국과 비교했을 때 경쟁우위를 점유하기 쉽지 않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수를 기반으로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한 한국산 제품 수요 감소나 그리스 유로존 이탈 가능성에 따른 EU 시장 수출 감소 우려는 한국경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리는 꾸준히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야만 하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과 기술 개발에 계속해서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여 물품을 생산하거나 국내로 유입시켜 제품을 완성하는 전략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원강국 중 하나로서 특히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시장의 최근 경제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진출 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분쟁 관련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한종만(2006)[1]은 러시아 경제가 푸틴 정권 집권 후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과 러시아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충배·노진호(2012)[2]의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석유수급 현황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공급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와 러시아 간의 에너지산업 정책의 합의점 모색과 지역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종문(2011)[3]은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탈에너지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술개발 및 경제구조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충열(2003)[4]의 논문은 러시아 교역확대를 위해 분쟁해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러시아 상사분쟁 해결제도 및 분쟁해결기관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분쟁 성격에 적합한 분쟁해결기관을 선택할 것과 중재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1) 한종만, “러시아 경제현황과 투자 환경 변화”,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6. 6. pp. 223~239.

2) 이충배·노진호, “동북아 석유자원의 공급원으로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역할”, 동북아경제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2. 6, pp. 1~33.

3) 이종문,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자원 의존과 네덜란드병 징후 분석”, 슬라브학보 제25권 4호, 한국슬라브학회, 2010. 12, pp. 291~319.

4) 이충열, “러시아 상사분쟁 해결기관의 특성과 선택 - 상사법원과 ICAC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3. 9, pp. 163~188.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러시아 경제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법률제도에 국한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상사분쟁에 대한 실질적 사례와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러시아와 같이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환경파괴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어 관련된 해외진출 기업들 역시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사회 분위기는 계약의 직접적 주체가 아닌 간접 투자자들까지 관계된 책임을 묻는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가 러시아 시장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에게 실무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Ⅱ. 러시아 투자 환경 변화

1. 러시아 경제현황

러시아는 2012년 의회 비준을 거쳐 그 해 156번째로 WTO 공식 회원국이 되었다.[5] 이는 러시아가 WTO가 비준한 상품무역,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준수의무가 부과되었음을 의미한다. WTO 회원국 가입은 1990년대부터 러시아 정부가 추진해온 결과물로서 향후 러시아 시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은 물론 서비스나 투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정부가 WTO 가입을 계기로 경제개발과 관련된 지원정책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점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6] 예를 들어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을 낮추고 민간에 매각한 정책 추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7]

현재까지 러시아는 에너지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관련 국제시장 분위기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5) 2012년 7월 러시아 의회는 WTO 가입안을 통과시켰고 동년 8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효시켰음.
6) 이재현, “러시아 WTO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9, pp. 316~317.
7) 러시아는 ‘2014-2016년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여 900개 이상의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 작업을 추진중임(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러시아의 경제 및 산업 동향 조사 보고, 2014’).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러시아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8] 바꾸어 말하면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러시아 무역의 수출호조와 무역수지 흑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짐작케 한다. 국제유가가 상승했던 2000년 이후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위주의 수출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외환보유액을 증가시켰던 점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9] 이때 당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결과적으로 세계 3대 외환보유국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고 러시아 경제 위기 때 막대한 외환을 기반으로 빠르게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도 있었다.[10]

그러나 최근 러시아 국내·외 상황은 마냥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제재 및 유가 하락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11] 러시아 루블(Rouble)화의 가치는 급속히 떨어져 2013년 달러당 30루블 정도에서 2014년 50루블 가까이 상승하였고 국제유가는 2013년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작년 말 기준 8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12] 한 때 세계 3위에 해당하던 막대한 외화보유고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13] 게다가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소비자물가상승으로 민간경제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러시아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2014년 4,80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그 해 말 3,7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러시아 투자환경은 최근 경기 위축 등의 이유로 투자등급까지 떨어졌다. 예를 들어 S&P 신용등급은 BBB-에서 BB+로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2015년 1월 기준).

---

8) 이종문, 전게논문, p. 298.
9) 한종만, 전게논문, p. 226.
10) 이종문, 전게논문, pp. 301~302.
11) 최근 EU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 경제제재를 2015년 9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함(출처 :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5/01/council-conclusions-ukraine/, 최종접속 2015. 5. 21.).
12)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경기침체가 중앙아시아 주요국 환율에 미치는 영향'(출처 : http://www.koreaexim.go.kr/kr/search/search.jsp?isDetail=none&where=info&resultInKeyword=%B7%AF%BD%C3%BE%C6&startCount=10&sortOption=RANK%2C1&searchKeyword=%B7%AF%BD%C3%BE%C6&searchTargetAllOpt=ALL&searchTargetOpt=finance&searchTargetOpt=news&searchTargetOpt=info&searchTargetOpt=customer&searchTargetOpt=bank&searchTargetOpt=edcf&searchTargetOpt=coop&searchTargetOpt=picture&searchTargetOpt=org&searchRangeAllOpt=ALL&searchRangeOpt=BBS_TT&searchRangeOpt=BBS_CTS&searchRangeOpt=FILE_NM&searchRangeOpt=FILE_CTS&searchPeriodOpt=ALL&startDate=&endDate=, 최종접속 : 2015. 5. 21).
13) 2014년 5,000억 달러 수준에서 2014년 말 3,700억 달러로 축소됨.

<표 1>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 %, 억 달러)

구 분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경제성장률	1.1	1.0	0.7	-0.2	-2.0
인플레이션	6.4	7.6	7.7	9.1	13.0
외환보유액	4,840	4,758	4,568	3,789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결국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경제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모든 해결방안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외환보유액 증가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이와 더불어 산업간 연계를 통한 발전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로서는 외국기업의 교역 및 투자제도를 더욱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 무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에너지자원에 대한 개방이 대폭 이루어진다면 러시아로서도 분명 예전 같은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러시아 교역과 기대효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는 자원을 수출하여 막대한 외환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나 육성은 빈약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명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다. 이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산업이 바로 가스 산업이다.

러시아는 현재 전 세계 30%를 차지하는 가스 매장량과 세계 1위의 생산 및 수출을 자랑하고 있다.[14]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의 수출주도형 전략은 에너지 소비를 높일 수밖에 없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전략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중국과 가스공급 개발을 추진하고

14) 윤성학,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동북아 공급 확대전략 추진", 통일한국 제29권 1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11, p. 14.

있으며 한국으로도 가스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북한 관통 노선을 협의 중에 있다.[15]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 사업은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선 가스관 사업을 통해 통과 수수료는 물론 북한의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노후화되어 가는 가스관 사업과 관련하여 수출입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가스 에너지의 국내 수입을 통해 외교적으로는 한국과 북한, 러시아 3자 간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겠다. 이렇듯 전 세계 LNG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및 비경제적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스관 연결 사업을 위한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시장 진출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 관련된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회 역시 가질 수 있다.[16] 이와 더불어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러시아, 북한을 연결하는 철도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철도사업을 통해 건설업계는 물론 물류산업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밖에 일차산업의 협력방안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최근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유라시아 대륙을 연계하는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17]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상호 연결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KOTRA처럼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세분화시켜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와 같이 건설업에 특화된 국가별 분류 및 계약과 금융방식 등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18] 끝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 진출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지구 건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러시아가 보유한 원유 역시 살펴봐야 한다. 러시아의 원유 매장량은 중동처럼 매우 높지는 않지만 세계 대비 5% 정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19] 석유와 같이 환경에 따른 수요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 자원의 경우 수출 경쟁력은 매우 높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의 석유소비량은 중국 2위, 일본 3위, 한국 7위로 전세계

15) 윤성학, 전게논문, p. 15.
16)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 방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1. 10, p. 37.
17) 김성국,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8, pp. 275~278.
18) 배홍균·최영준·강신원, “국내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출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1권 ,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2, pp. 252~254.
19) 이충배·노진호, 전게논문, p. 7.

상위권에 기록되어 있는바 석유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분명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20] 따라서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을 늘려 수출을 증대시킨다면 세계 최대 소비국들이 분포되어 있는 동북아 국가들은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용 및 운송시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적극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석유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외국기업 활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 역시 자원 확보를 위해 상당한 비중의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하나의 예로 중국은 자원 확보를 위해 세계시장에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산업의 경우 이미 서구 중심의 다국적기업들이 대부분의 채광권을 소유하고 있어 아직까지 미개척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1] 따라서 러시아가 외국기업 진입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러시아가 경제 개방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인다면 자원개발은 물론 수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유럽 중심의 수출노선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노선 강화로 수출 다변화라는 안정적 경제정책 역시 펼칠 수 있을 것이다.[22]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결국 다른 산업으로 연결되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한 몫 할 것이다. 그밖에 동북아 지역의 외교라인을 강화시켜 그동안 약화되었던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계 역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와의 협력사업 증대로 자원 확보 이외에 북한과의 관계 회복 및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거대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23]

---

20) 이충배·김정환·노진호,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석유자원개발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2. 2, p. 214.
21) 이충배·노진호, 전게논문, p. 22.
22) 이성규, 전게논문, p. 38.
23) 안건형·김성룡, “FTA를 활용한 대북 투자 활성화 방안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0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5. 3, p. 110.

Ⅲ. 분쟁사례분석

1. 유형별 분쟁 발생 가능성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와의 교역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 특징만으로 교역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안정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러시아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유형 특히 투자 관련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 분쟁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러시아연방 헌법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공동 관할을 보장하고 있다.[24] 따라서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자원이 포함된 지방정부와 마찰이 없도록 관련 규제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방정부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큰 틀에서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원개발 자체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5]

외국기업의 분쟁 발생은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에 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사법기관을 통한 분쟁해결만 존재하지는 아니다. 러시아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으로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26] 다만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하 '워싱턴협약'이라 한다)은 체결국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비준하지는 않아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7]

---

24) 김한칠, "러시아연방에서 외국인 투자의 법적환경", 국제지역정보 제7권 제1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3. 11, p. 91.

25) 러시아연방헌법 제36조.

26) 러시아 연방은 1960년 뉴욕협약을 비준하였고 1991년 체약국으로서 러시아가 승계함.

27) 러시아 연방은 1992년 6월 16일 워싱턴협약에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은 현재 하지 않은 상태임(출처: https://icsid.worldbank.org/apps/ICSIDWEB/about/Pages/Database-of-Member-States.aspx?tab=PtoT&rdo=BOTH, 최종접속 : 2015. 7. 21).

러시아의 주요 분쟁해결기관을 살펴보면 중재법원과 중재원, 국제상사중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재법원은 영문으로 'Arbitration'이란 용어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러시아어 표기는 arbitrazh로 상사(commercial)의 개념에 가까운 일반 사법기관을 의미해 기업은 계약서 작성 시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반드시 유의해서 분쟁해결조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28] 그리고 만일 기업이 러시아 내 비사법기관을 선택한다면 국제상사중재원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적합하다. 물론 상설기관이 아닌 임의중재 방식의 국제중재 역시 가능하다.

이밖에 자원 탐사 및 생산 등 개발과 관련된 분쟁도 발생 할 수 있고 금융 관련 분쟁 역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러시아 월드컵과 관련된 건설 관련 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끝으로 러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이 실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경을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의 경우 국제협정을 통한 지위 확보와 통과국의 국내법 적용 및 다자간 별도로 체결된 법적 장치 등으로 지위를 구분할 수 있다.[29] 현재 유럽과 연결되는 러시아 수출용 가스관의 경우 통과하는 국가마다 별도의 계약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북한, 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이 진행된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통한 지위 확보는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분쟁이 계약당사자의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될 수도 있겠으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도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국제 NGO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러시아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 시 환경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2. 분쟁사례

1) Quasar de Valores SICAV SA and others v. The Russian Federation

본 사건은 러시아 정부의 간접수용 문제로 인하여 스페인 국적 투자자들이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중재기관(Arbitration Institute of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28) 이충열, 전게논문, p. 166 ; 최수진,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 Jisung Horizon Newsletter Vol. 2. No. 1,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 1.
(출처 : http://www.js-horizon.com/newsletter/04_200901/data/russia.html, 최종접속 : 2015. 7. 21).

29) 이성규, 전게논문, pp. 41~42.

이하 'SCC'라고 한다)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30] 본 사건의 발단은 러시아 정부가 이들 중재 신청인들이 투자한 '유코스'라는 러시아 석유회사의 국유화로 인해 발생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최초 '유코스'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본 기업의 탈세 혐의가 발각되면서 정부는 가산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코스'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불복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러시아 정부는 '유코스'사의 가산세 체납 등의 이유로 '가즈프롬(Gazprom)'을 비롯한 몇몇 국영기업들을 통해 '유코스'사를 국유화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코스'사에 투자한 스페인 투자자들은 '유코스'사의 국유화 과정과 관련하여 스페인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에 체결된 BIT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용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들은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 자산을 행정적, 법적 지위를 남용하여 몰수하였고 이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코스'에 대한 자산 몰수 및 국유화 과정이 단순히 탈세 혐의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국가로 환원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스페인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한 BIT 제6조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보상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유코스'는 러시아법을 위반한 범법자로서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을 체납하였기 때문에 법에 따라 자산을 몰수하고 파산한 기업을 국유화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한다. 게다가 '유코스'는 90년대 후반부터 조세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은닉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BIT의 수용 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중재 신청인들의 중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며 또한 중재신청인 자격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대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를 신청했기에 신청인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양쪽 주장에 대해 SCC 중재 판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과세를 빌미로 '유코스'사의 자산을 몰수하였고 이로 인해 '유코스'사가 파산하여 결국 국유화되었다면 이는 충분히 간접수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스페인 투자자들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코스'사 자산몰수 및 국유화로 인한 투자손실금 200만 달러를 보상할 것을 주문하였다.

---

30) SCC Arbitration Award between Quasar De Valores SICAV S.A., Orgor De Valores SICAV S.A., GBI 9000 SICAV S.A., ALOS 34 S.L. and The Russian Federation(출처 :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1075.pdf, 최종접속 : 2015. 7. 15).

2) Stroitel & Sakhalin Environment Watch v. Standard Chartered et al

본 사건은 2012년 비영리 원예단체(Non-commercial Gardening Association)인 Stroitel과 NGO 단체인 Sakhalin Environment Watch가 Sakhalin Ⅱ 프로젝트 개발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한 사건이다.[31] Sakhalin Ⅱ 프로젝트는 러시아 국유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이 대주주로 있는 사할린에너지투자회사(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이하 'SEIC'라 한다)가 운영한 사업이다. 본 사건의 이의제기자들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생산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본 프로젝트로 인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환경파괴로 인해 건강과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민들 역시 정당한 보상 없이 퇴거조치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OECD Guidelines'라 한다)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라 한다)를 통한 이의제기절차를 이용하였다.[32] 여기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본 사건 피신청인은 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SEIC나 대주주인 가즈프롬(Gazprom)이 아닌 본 프로젝트에 금융대출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 회사들이라는 점이다.[33]

신청인들에 따르면 이들 피신청인들은 각각 본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SEIC의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막대한 금액의 대출을 제공하거나 이미 프로젝트 개시 당시 SEIC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피신청인 중 하나인 영국 기반의 Barclays는 20억 달러를 대출해 주었고 Standard Chartered는 53억 달러의 금융 대출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네덜란드 기반의 Royal Bank of Scotland Group은 70억 달러의 대출금을, Royal Dutch Shell 회사는 SEIC 주식의 상당부분을 프로젝트 시작부터 보유하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주요 이의제기사안은 석유 및 가스 생산단지의 위생구역을 좁게 설정함으로 주변 토지소유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수년간의 공사로 인해 토지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주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런데 본

---

31) http://www.accountabilitycounsel.org/wp-content/uploads/2012/03/7.31.12-Complaint-Sakhalin-II-Dutch-UK-NCPs-Final.pdf ; OECD Watch, *Quarterly Case Update of OECD Guidelines casese filed by NGOs*, Vol.7 Issue.3, November. 2012, p. 4.

32)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지속적 개발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기여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가입국은 홍보 및 기아드라인 이행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국내연락사무소(NCP) 설립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Edition*, 2011).

33) 본 사건의 피신청인은 Barclays(영국), Royal Bank of Scotland Group(네덜란드), Standard Chartered(영국), Royal Dutch Shell(네덜란드) 등 4개의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이 대상이 되었음.

프로젝트에 투자한 영국과 네덜란드 기업들은 투자자로서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아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 중 하나인 Barclays는 대출을 실제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서면과 함께 근거 없는 주장임을 밝혔다. Standard Chartered는 대출 사실은 인정하지만 OECD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였고 특히 생산단지의 환경, 안전 등 사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감독하기 위한 독립된 자문기구까지 갖추었음을 주장하였다. Royal Bank of Scotland Group의 경우 기업대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들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접수한 영국과 네덜란드 NCP는 우선 Barclays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역시 SEIC 기업과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하시켰다. Standard Chartered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쟁점과 관계됨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시켰다. 끝으로 Royal Dutch Shell은 사할린 프로젝트 개시 이전 SEIC의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제기된 쟁점들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본 기업이 위반했다는 점을 찾을 수 없어 각하로 종결시켰다.

3) 한국철도공사 사할린 유전공사 분쟁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은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러시아 알파에코와 페트로사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620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사할린 주정부의 인수계약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정부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승인을 거절함으로서 철도청은 인수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문제는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알파에코가 돌려줄 수 없다고 통고함으로서 발생하였다. 다행히 두기업간 협상을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였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철도청 역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한 협상임을 알 수 있다.

협상결과에 따르면 알파에코 측은 철도청의 계약해지에 따라 페트로사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수밖에 없었는데 철도청이 인수계약을 해지함으로서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인수자가 나타났을 때 페트로사흐 인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철도청이 보전해 주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만일 철도청이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수락하지 않을 경우 두 기업은 인수계약서 상 분쟁해결방법인 중재절차를 개시해야만 했다. 따라서 철도청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알파에코 측이 행정적 처리비용

으로 사용한 310만 달러와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후속조치 비용인 4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50만 달러를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철도청이 해당 건에 합의함으로서 총 270만 달러만 돌려받기로 하고 종결된 사례이다.[34]

Ⅳ. 한국기업의 분쟁대응전략

러시아는 분명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매력적 교역대상이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과 러시아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향후 언제든지 교역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러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분명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 분쟁뿐만 아니라 그밖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역시 고려해야만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국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관련 단체나 기구들이 제기하는 문제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사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분쟁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전적 대응전략

일반적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은 경제성, 생산성, 위치선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 해외시장 진출을 결정한다. 이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최우선 과제겠지만 진출환경에 대한 위험요소 역시 고려 대상일 수밖에 없다. 앞의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SCC 국제중재 사건은 간접수용에 대한 문제로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잘 반영해 준 사례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수용'이란 국가가 사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간섭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BIT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한 것을 투자 유치국 정부가 함부로 수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수용'이란 직접적으로 정부가 투자자의 재산을 박탈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행위나 규제로 인해

34) 김기현, "러 유전사업 얼마나 알고 덤비나", 주간동아 482호, 2005. 4. 26.자, pp. 52~54 ; 최수진,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 Jisung Horizon Newsletter Vol.2. No.3,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 3(출처 : http://www.js-horizon.com/newsletter/06_200903/data/russia.html, 최종접속 : 2015. 7. 21).

유사한 수준의 손실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침해정도, 기간, 의도 및 동기 등이 고려된다.[35] 그리고 이런 모든 투자유치국 정부의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태도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러시아 진출을 준비할 때 관련될 수 있는 협정이나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협약 등을 살펴보고 외국기업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분쟁사례 및 그에 따른 판정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해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차후에 분쟁 초기단계에서 당사자 간 협상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 진출에 따른 이익 분석 못지않게 분쟁 발생에 따른 손실 최소화 방안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워싱턴협약에 따른 ICSID 중재 신청이 가장 빈번하였으나 러시아의 경우 아직까지 협약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절차진행보다 판정에 대한 집행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SCC 국제중재 사례처럼 러시아 관련 분쟁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 있는 중재기관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시 해당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제도 활용방안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분쟁 발생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 등 경제적 측면과 사업 추진에 있어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기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전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월마트(Walmart)나 듀폰(Dupont)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조기 분쟁 평가(Early Case Assessment, 이하 'ECA'라 한다)를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발생된 분쟁을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조기에 해결하도록 정보 수집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월마트나 듀폰 같은 기업들은 ECA 플랫폼을 기업 특성에 맞게 만들어 분쟁비용 등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조기 분쟁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 기업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꾀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도입 역시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러시아 기업과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중 어느 곳에서 해결할지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만일 비사법기관에 따른 국제중재를 선택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중재기관에 대한 사전조사는 물론 어느 국가의 중재기관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분명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중재를 다루는 러시아 상공회의소와 국내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간에는 상호 협정

35) 오원석·황지현, "간접수용의 보상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8, p. 150.

이 체결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중재기관들 사이의 업무협조가 가능하다.[36] 두 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정문에 따르면 별도의 중재조항을 삽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37]

또한 상대국 내 중재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중재합의 작성 시 준거법과 중재지, 언어, 중재인선정, 절차진행방법 등 여러 가지 협상해야 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대응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내 신속절차 규정을 계약 체결 시 포함시킨다면 절차적 신속성을 높일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38] 또한 러시아 법원과 중재기관이 서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자칫 분쟁 발생 시 본안 자체에 대한 다툼에 앞서 분쟁해결기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책임있는 기업행동 준수전략

다음으로 기업들은 NGO 등 국제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의 사례를 보면 NGO 단체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투자 유치국 내 기업 행위는 물론 이들에 대한 투자기업에까지 감시의무 소홀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약한 분야이기도 하다.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OECD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NCP에 이의제기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은 향후 우리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앞의 사례는 해당 기업들의 실제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하여 1차 평가(Initial Assessment)에서 각하는 되었지만 이들 단체들이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분명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따지기 이전에 관련된 이슈는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어 간과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인도 오리사주에 진출한 포스코는 한국 NCP에 이의제기대상자가 되어 1차

---

36) 1994. 5. 16. 대한상사중재원과 러시아 상공회의소간의 상소중재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arbitcontract/1020?ac_clsf=1&sNum=4&dNum=1&mi_code=arbitcontract).

37) 대한상사중재원과 러시아 상공회의소간의 상사중재협정에 따르면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한, 러시아 상사중재협정에 따라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협정의 조건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http://www.kcab.or.kr).

38)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6장.

평가를 받은 바 있다.[39] 오리사주와 30년간 철광석 개발 조건으로 제철소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마을 주민들과 제대로 합의 없이 토지를 수용한 점과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40] 이와 관련하여 국제 NGO 단체들은 한국 NCP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포스코 소액주주인 네덜란드 연금 기금과 노르웨이 국부 연금 투자은행까지 감시의무 소홀로 네덜란드 NCP와 노르웨이 NCP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의제기사건과 유사한 면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투자받은 기업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동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쟁은 해당기업의 잘못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국제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 당사자 간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와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다국적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의 투자처이기 때문에 포스코인디아와 유사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 내 국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실무 부서의 기능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러시아에 정통한 전문가 및 특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계약 초기단계부터 받아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법률전문가를 찾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보다 계약 초기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고 계약 지속성을 위해서도 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기업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Ⅴ. 결 언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이다. 에너지 자원의 소비가 큰 동북아 국가들로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러시아의 경제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른 러시아 시장 개방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마찰로 인한 경제 제재조치로 내수시장 불황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기업은 러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

39) Lok Shakti Abhiyan et al. v. POSCO(http://www.ncp.or.kr/servlet/kcab_ncp/info/4001)

40) 김성룡·정철호, “FTA시대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0권 제5호, 한국무역연구원, 2014. 10, p. 16.

리나라와 같이 자원은 부족하지만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어온 국가는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안정적 자원 확보가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추진과제 역시 유라시아 진출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잘 진입하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장진출에 따른 손익계산뿐만 아니라 법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분쟁 발생에 따른 조속한 해결방안까지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러시아 관련 몇몇 분쟁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정부와의 마찰에 따른 국제중재사건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위반여부를 묻는 이의제기사건도 있었다. 특히 직접적 계약주체 이외에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처에 대해서도 감시의무 소홀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은 향후 러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하거나 현재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에게는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러시아 시장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분쟁해결방법에 있어서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중 어디를 선택할지와 비사법기관을 선택 시 중재기관 선정에 대한 접근방법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특히 가급적 러시아와 관련된 국제중재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 있는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재판정 집행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ECA를 활용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사례들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적합한 플랫폼을 기업 차원에서 개발한다면 조기에 기업 분쟁을 평가하고 적합한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기업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적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기업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형성된다면 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업에게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어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업은 OECD 가이드라인처럼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해외진출 시 사업 성패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해당지역에 잘 정착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과 해당 시장의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영속성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밖에 계약 초기단계부터 러시아 전문 법률가들의 조언과 상담을 받는다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기현, “러 유전사업 얼마나 알고 덤비나”, 주간동아 482호, 2005. 4.

김성국,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8.

김성룡·정철호, “FTA시대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0권 제5호, 한국무역연구원, 2014. 10.

김한칠, “러시아연방에서 외국인 투자의 법적환경”, 국제지역정보 제7권 제1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3. 11.

배홍균·최영준·강신원, “국내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출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2.

안건형·김성룡, “FTA를 활용한 대북 투자 활성화 방안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0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5. 3.

오원석·황지현, “간접수용의 보상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5.

윤성학,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동북아 공급 확대전략 추진”, 통일한국 제29권 제1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11.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 방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1. 10.

이재현, “러시아 WTO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9.

이종문,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자원 의존과 네덜란드병 징후 분석”, 슬라브학보 제25권 4호, 한국슬라브학회, 2010. 12.

이충배·김정환·노진호,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석유자원개발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2. 2..

이충배·노진호, “동북아 석유자원의 공급원으로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역할”, 동북아경제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2. 6.

이충열, “러시아 상사분쟁 해결기관의 특성과 선택 - 상사법원과 ICAC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3. 9.

최수진,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 *Jisung Horizon Newsletter Vol. 2*,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

한종만, “러시아 경제현황과 투자 환경 변화”,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6. 6.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Edition,* OECD Publishing, 2011.

OECD Watch, *Quarterly Case Update of OECD Guidelines cases filed by NGOs*, Vol.7 Issue.3, OECD Watch, 2012.

Lok Shakti Abhiyan et al. v. POSCO(출처: http://www.ncp.or.kr/servlet/kcab_ncp/info/4001).

SCC Arbitration Award between Quasar De Valores SICAV S.A., Orgor De Valores SICAV S.A., GBI 9000 SICAV S.A., ALOS 34 S.L. and The Russian Federation.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ABSTRACT

A Study on the Dispute Resolution Strategy of Korea Companies on Russia's Investment Environment Changes

Sung-Ryong KIM

Russia has a huge amount of energy resources. It is an attractive factor to countries which spend loads of energy. Republic of Korea is also one of large energy consumption countries. Therefore, It will be needed to raise energy cooperation with Russia. It's companies will increase trade focusing on the energy industry in the long term.

Recently, However, Foreign companies should be careful when they enter the rapidly changing Russia market. In other words, companies will need a strategic approach to prepare the early case assessment and how to solve a possible dispute as they analyze cost and profit in business.

This study is analyzing several dispute cases related in Russia. It presents some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such as dispute resolution method, arbitration institution selection method and so on. In addition,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the early case assessment for reducing a waste of time and cost.

Furthermore, according as the importance of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highlight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companies should prepare practical division to establish a system of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inally, they will have to get an advice and counseling from the Russia legal exper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ntract.

Keywords : Arbitration, New York Convention,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SCC, ECA